

제25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4.12.)

조례안, 일반의안 심사 보고서



거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
2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3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9
4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9
5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3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3. 26.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3. 30.
-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윤광식 경제교통과장]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2021. 6. 23. 시행)으로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요내용
 - 1)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확대(안 제2조제2항)
 - 가)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기능 대행
 - 나) 근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3. 15~3. 2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 보행안전편의 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성격과 기근이 유사한 위원회에 기 기능을 대신하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하고자 함.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3제1항에 의거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장등의 소속으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대체함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됨.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2조(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등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3. 26.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3. 30.
-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태환 산림과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되어있던 내용이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21. 6. 10.)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제명, 위원회 명칭, 인용 법령 등을 변경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명, 제4조)
(현행)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변경)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 나. 위임조례 입안원칙에 맞게 목적 변경함(안 제1조)

다. 법령 등 중복·재기재 사항 등 불필요한 규정 정비(안 제2조·제11조·제17조·제18조·제19조)

1) 적용범위, 식재기준, 보고, 관리대장, 시행규칙

라.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및 비용부담 조문 분리(안 제13조·제14조)

마. 인용 법령 및 용어 변경함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림, 생활림

(변경)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숲, 생활숲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27.~3. 19.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반영함(제5조제3항)

5.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순화]

-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되어있던 내용이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21. 6. 10.)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제명, 위원회 명칭, 인용 법령 등을 변경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거창군 가로수 조성 ·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를 “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4조 조 제목,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제4호·제5호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도시림·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도시숲·생활숲”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을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 업무 담당부서장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조 제목 “(회의 및 수당)”을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림등”을 “도시숲등”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 치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및 징수) ①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비용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고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7조·제18조·제19조를 삭제한다.

별표 2 및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및 위원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2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와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으로써 군 행정구역 안의 가로수에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4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p>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 조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승인사항 중 연장 200미터 이상 가로수를 제거하는 사항(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 조성·

- 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부위원장은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림등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회의 및 수당) ①~② (생략)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협약)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6.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5. (생략)

제11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

- 관리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4. 도시숲등 관련 사업의 계획, 설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장이 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담당주사로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0조(협약)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

<삭 제>

려하여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 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다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부서는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3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

제13조(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승인)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옮겨심기·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행위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조례,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에 따라 군수가 산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림등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부담금의 징수)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7조(보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정기점검 결과를 14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대장) 군수는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14조(비용부담 및 징수) ① 제13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비용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라 군수가 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고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에게 해당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도시숲등업무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가로수 관리대장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표 2]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4조 관련)

유형	산정기준
<p>1. 벌목, <u>나무줄기 자르기</u>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p> <p>2. <u>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u>(과도한 가지훼손이란 <u>나무줄기의 3분의 1 이상을 훼손하는 경우를 말한다</u>)</p> <p>3. <u>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이 필요한 피해의 경우</u></p> <p>4. <u>나무심기 및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u></p> <p>5. 제거하는 경우</p>	<p>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p> <p><u>나무비용의 20퍼센트</u> + 실제 작업비</p> <p>실제 작업비</p> <p>가. 원인자가 <u>나무심기 및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u> 1) 군수의 승인 및 감독 2) 군수의 지시에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p> <p>나. 군수가 <u>나무심기 및 옮겨심기를 하는 경우</u>: 원인자가 <u>나무심기 및 옮겨심기에</u> 따른 도급공사설계비</p> <p>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 및 감독: 대체 <u>나무심기</u>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p> <p>나. 군수가 제거하는 경우: 대체 <u>나무심기</u>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제거비</p>
<p>1)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모든 경비)하여 산정</p> <p>2) <u>나무 비용</u>: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p> <p>3)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보증보험증권이나 <u>나무가 말라죽었을 경우</u>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p> <p>4)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u>경우</u>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u>한</u>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담보금을 환불</p>	

[별지 서식]

가로수사업(나무심기·옮겨심기·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나무 종류		규격	높이: 가슴높이지름: 나무밑동지름:	수량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부담비용	금 액	금 원정()			
	납부기간				
<p>「거창군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거 창 군 수 귀 하</p>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3. 26.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3. 30.
-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임춘구 환경과장]

「지하수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정기준을 신설하여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법령 재기재 및 위배사항을 정비하여 군민 불편·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정기준 신설(안 제3조의2)
 - 1) 법제처 조례규제개선과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나. 법령 등 재기재사항 삭제
 - 1) 정의, 위원 기능·수당, 가산금, 시행규칙(안 제2조·제4조·제10조·제20조·제22조)

다. 실효 규정인 지하수특별회계 삭제(안 제3장(제12조~제16조)

1) 근거: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부칙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2) 내용

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

나) 개정당시 부칙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2018. 12. 31.까지로 존속기한 만료

라) 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등 변경(안 제19조·제2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하수법」 제14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지방재정법」 개정(2014. 5. 28.) 부칙 제4조제2항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5.~2.25.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규제개선과제로 추진된 안으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감경기준 신설과 법령위임이 없는 조례강제 규정 삭제 등 군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법령 재기재 및 위배사항을 정비하여 군민 불편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 중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을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이행보증금의 감정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행보증금 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50
2.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제4조 앞의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장(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7조 앞의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삭제하고,
제17조 조 제목 “(부과·징수)”를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유량계”를 “유량계(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을 “「지
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
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3항 중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u>시행규칙</u>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삭 제></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u>시행규칙</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양도·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p> <p>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p>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p>	<p><삭 제></p>
<p>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u>거창군수</u>(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p>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 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 2.~3. (생략)

1.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 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 2.~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이행보증금의 감경기준)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행보증금 감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100분의 50
2.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초과 2백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

제2장 지하수관리위원회

<삭 제>

제4조(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영 제4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

<삭 제>

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제12조(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하수에 대한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거창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 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용도
3.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4. 제17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드는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
5.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을 징수관 및 재무관으로, 지하수업무 담당주사를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으로 각각 지정한다.

제16조(관리 및 운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장 지하수이용부담금

<삭 제>

<삭 제>

제17조(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3. 국가 또는 군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제18조(산정방법) ①~② (생략)

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9조(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

①~② (생략)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전산용 2)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
3. 국가 또는 군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제18조(산정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삭제>

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가산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21조(부과액 조정신청)

①~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21조(부과액 조정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3. 26.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1. 3. 30.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장봉기 수도사업소장]

「하수도법」 개정(2021. 1. 5. 시행)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 등 다양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고,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법령위임 범위에서 가산금 범위를 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령위임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방법 명시(안 제16조2)

나. 법령 위임범위에서 가산금 범위를 확정하여 정함(안 제2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61조·제73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1. 2. 8.~2. 28.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결제 등 다양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공공하수도 체납 사용료에 대한 가산금 징수근거 규정을 개선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며,
-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부과당월”을 “부과하는 그 달”로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사용료등”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가산금) 법 제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경우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③ (생략)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u>부과당월</u>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p>	<p>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u>부과하는 그 달</u>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p>
<p>제16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u>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u></p>	<p>제16조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u>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u></p>
<p>제28조(이의신청) ① <u>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②~④ (생략)</p>	<p>제28조(이의신청) ① <u>사용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u> ②~④ (현행과 같음)</p>
<p>제29조(가산금) <u>군수는 사용료등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된 금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u> 1. <u>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미납요금x2/100x12개월x연체일수/365</u> 2. <u>납부기한을 경과한 날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미납요금의 100분의 2</u></p>	<p>제29조(가산금) <u>법 제7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할 경우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u></p>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민간위탁 동 의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 3. 26. 거창군수
- 나. 회부일자 : 2021. 3. 30.
- 다. 상정일자 : 제256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021. 4 6.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윤중 농업기술과장]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함

3. 주요내용

- 가. 현황
 - 시설명 : 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 위치 : 고제면 봉계리 525-1 일원
 - 주요시설 : 7ha정도
 - 과원시설 : 1.35ha(사과 1.1ha, 오미자 0.25ha)
 - 공원시설 및 부속건물 등 : 5.65ha
- 나. 위탁사무
 - 과원시설 : 사과 다축과원 시범포 조성 및 교육장 활용
 - 공원시설 : 예취작업, 수목관리 등 공원 내 환경정비
 - 관리동 및 농기계창고 등 기타부속시설 유지 관리

다. 그 간 운영현황

운영기간	위탁자	재정운영현황(원)			비고
		년도	소득	임대료	
'09년 ~'11년	생명두레문화교육원 (대표 한대수)	2009	무	없음	공모
		2010	무	없음	
		2011	무	6,600,000	
'12년 ~'14년	생명두레문화교육원 (대표 한대수)	2012	23,279,047	7,000,000	갱신
		2013	24,827,873	7,450,000	
		2014	19,849,830	5,950,000	
'15년 ~'17년	베짱이영농조합법인 (대표 오승철)	2015	34,833,950	10,450,000	공모
		2016	31,449,133	9,434,740	
		2017	78,314,794	10,964,070	
'18년 ~'19년	베짱이영농조합법인 (대표 오승철)	2018	61,732,240	8,642,510	공모
		2019	93,807,698	13,133,070	
'20년	베짱이영농조합법인 (주)거창한파머스농업법인	2020	11,576,700	1,620,730	공모
			25,355,088	3,549,710	

라. 운영계획

- 위탁기간 : 위·수탁체결일 ~ 2025. 12. 31.
- 위탁범위
 - 사과 다축과원 시범포 조성 및 교육장 활용
 - 사과테마파크 부지 및 시설에 대한 관리
- 수탁자선정
 - 수탁자격
 - 거창군 관내 농업관련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나 개인
 - 사과원 자가 조성 유경험자(단체시 5년이상 사과재배 유경험자 2인이상)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기준
 - 공익성, 시설과 장비 운영능력,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민간위탁심의회를 구성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선정

마. 소요예산 :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나. 향후계획

- 2021. 4. : 민간위탁 군의회 동의
- 2021. 4. : 입찰공고
- 2021. 4. : 적격자 선정(민간위탁 심의위원회)
- 2021. 4. ~ 5.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21. 5. ~ 2025. 12. : 수탁자 위탁운영 실시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에서 사과 다축과원 시범포 조성 및 교육장 활용, 사과테마파크 부지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함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과 위탁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에도 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는 규정과 위탁기간이 되어 있음.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에 따르면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으며, 자치사무인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거창사과테마파크 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됨.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면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는 규정과 민간위탁기간도 기존 민간위탁 3년, 2020년 1년으로 민간위탁 기간에 대한 운영, 관리상의 사유분석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 운영 및 관리능력을 갖춘 법인,단체,개인을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 없음

8. 수정안 요지 : 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관 계 법 령

【거창군 사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

제15조(운영위탁) ① 군수는 사과테마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위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가 운영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수탁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사과테마파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사과테마파크를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위탁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수익이 발생하는 체험시설을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총당하기 위하여 수탁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되, 재해 발생 시에는 사용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매년 12월말의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되, 사용료의 납부 및 경감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탁에 관한 협약에 따른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2015.1.20.>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2015.1.20.>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5.1.20.>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 2015.1.20.>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26.]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2항·제3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이용료와 관리비용을 다시 대여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의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